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별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관련 기관, 사업장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일 및 특례를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별목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관련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일까지 별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별목작업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wndehr72@korea.kr - 팩스 : 044-202-80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